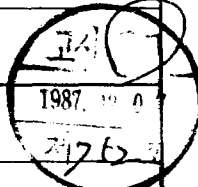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교기 33100-	(전화: 735-6716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교통국장	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87. 12,	12. 7	
보조기관	교통기획과장	협조기관	문서봉제
	교통운영계장		
기안책임자	최성용		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신 명 의	
제목	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조례(안) 입법예고		
(제1안)	내부결재		
	1.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9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제		
	적용을 위한 도심 및 외곽지역 구분 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.		
첨부	공고안 1부.		
(제2안)			
수신	공보관		
제목	같은건		41
	1.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제		



조 례 안 입 법 예 고

=====

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

도시 교통정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제의 적용을 위하여 도심시 외곽지 구분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

교통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1. 제성취지

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1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도심과 외곽 지역으로 구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도심지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

2. 주요내용 (도심 및 외곽지역 구분)

가. 도심지역

- 4대문 주변지역 : 퇴계로, 용인본로, 울곡로, 사작로 및 의수로
를 경계로 하는 내부지역과 인접하는 외곽부지 다만 사업 및 시설의
주진출입로가 위에 열거된 도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간선도로
(폭25m이상)와 연결될 수 없는 경우는 그 부지 까지를 도심지역으로
안다
- 영등포지역 : 여의도 및 당산로, 선유로, 경인로, 노들길을
경계로 하는 내부지역과 인접하는 외곽 부지
- 영동지역 : 반포로, 효령로, 역삼로, 언주로, 압구정로,
잠운로, 신반포로를 경계로하는 내부지역과 인접하는 외곽 부지

43

- 잠실지역 : 석촌호수길, 오금로, 잠실철교 남단, 올림픽대로를
경계로하는 내부지역과 인접하는 외곽부지
- 천호지역 : 강동대로, 둔촌로, 구천면길, 선사로, 풍납로를
경계로하는 내부지역과 인접하는 외곽부지

나. 외곽지역 :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7.12. 까지
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(참조 : 교통기획과장)에게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교통기획과(735-6716)로 문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